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당공 1344-1/3	(전화번호 025-7649)	전경규점	조 / 함 전경사함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조기관	산업경제국장 권결 상공과감 장 표준계장 장	82.8.13 공고제 358 호	법무담당관 장		
기안책임자	김동수 (국과) 82. 8. 13		조		
영수 삽 주	각 안 참조	발 신	시 장		
제 목	KS 표시검지 처분				
(제 1안) 내부결재 1. 당공 1344-1072 (82.8.3) 호와 관련됩니다 2. 당시 관내 구릉구 구릉동 610-8 소재 한일전선(주)의 KS 표시품인 KSC 3302 600V 비닐절연전선에 대한 시판품조사 실시 결과 위품에 가격미달이 발생하여 변명거리를 부여 하명된바, 3. 별첨 변명서와 같이 기준미달 사항을 시인하였으므로 공업표준화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표시검지 처분하고 별첨 시판품조사한바, 가. 처분내역					
가격번호	품 명	종류·등급	가격미달 내용	처분내용	반송
KSC 3302	600V 비닐절연전선	단선 2.0mm ²	절연저항(상온) 기준미달	표시검지 (3개월)	
(제 2안)					

공 고

1982. 8. 16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6

KS 표시 권치 취분 공고

공업표준화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KS (한국공업
규격) 표시 권치 취분 하였고 등본 시행 계획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고 한다

1982. 8. 16.

서울특별시 장

허가 번호	제 1201 호
허가 일자	1975. 11. 26
제 조 업체	한일 전선 주식회사
대 표 자	이 용 학
소 재 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610-8
규격 번호	KSC 3302
품 명	600V 비닐절연전선
종류·등급	단선 2.0mm
취분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취분사유	KS 규격 미달

(제 3안)

수신 서울 구로구 구로동 610-8

한일 전선 (주) 대표 이 용 학

결재
1982.8.17

제 목 등 건

1. 귀사의 KS 표시 품목인 KSC 3302 600V 비닐절연
전선에 대한 시험품 조사 실시 결과 KS 규격에 미달 하여
공업표준화법 제2조 및 등본 시행 계획 운영요강 제2조 제2항에

의거 아래에 같이 해명처분 하려 양지 하시고 처분기간중
관계법 준수에 만전을 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내역

(제 1안 제 3항 "가" 이기 시행)

첨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1부



(제 4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공고 송부

당시 공고 제 호를 송부 하여 업무에 참고
하에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1부

수신처. 문교부, 당공부, 건설부, 공안진흥청, 국방부조달본부,
조달청, 철도청, 42-13, 시도교육위원회,
대한주택공사, 농협중앙회, 한국전력공사

(제 5안)

수신. 공보관

발신. 상공과장

제목. 시보 게재 의뢰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를 송부 하여 시보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1부 끝